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04호 2017. 6. 22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7-10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017-11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 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# 사 천 시 공 보

제504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7 - 108호

#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6. 16 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7 - 2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7년 6월 16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 - 송포마을 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어촌체험장조성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실안동 1129 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411.0㎡(직접 111, 간접300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7년 6월 16일 ~ 2032년 6월 15일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지역개발과장)
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# 사 천 시 공 보

제504호(3)

## 승 인 조 건

1. **승인목적 준수** :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**승인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승인** : 피승인자가 면적, 기간 등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·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3. **본 승인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**
  - 가. 동 시설물 운용 시,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(폐기물), 죽은 물고기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 - 나.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, 부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다. 어선의 이·접안 및 유류 급유 시,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라. 주변해역을 이용하는 어선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마. 또한,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- 바. 권리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 시설운용과 관련한 해역 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4. **문화재 관련** :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알려야 합니다.
5. **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** :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·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04호(4)

## 6. 시설물의 관리

- 가.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·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나.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,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다.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7. **공유수면의 원상회복** : 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점·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승인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8. **승인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** :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(기간연장) 신청하여야 합니다.

9. **민원 해결 등** : 동 공유수면 점·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.

10. **승인조건의 이행** :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끝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04호(5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7 - 111 호

#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6. 21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7-1(2017. 4. 27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의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및 도교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-9 번지선 공유수면(낙지포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 - 승인번호 : 제2017-1 (2017. 6. 21.)
  - 공사기간 : 2017. 4. 27. ~ 2017. 8. 26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7. 6. 21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